

예산총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9,427,673	21,582,830
일반회계	642,138,819	19,264,165
특별회계	77,288,854	2,318,666
기타특별회계	77,288,854	2,318,66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9,121	7,1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73,005,970	2,190,179
수질개선 특별회계	66,818	2,00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669,297	20,07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804,516	24,135
주차장 특별회계	2,382,500	71,475
기반시설 특별회계	87,540	2,626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33,092	99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965,65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